

학생의료공제조합 이용안내

목적

본교 재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적절한 진료비 지급으로 조합원의 건강유지와 보건향상에 기여함.

조합원의 자격

본교 재학생으로 의료공제조합비를 납부한 학생 (단, 휴학생 과 수료생은 제외됨)

적용 대상 의료기관

- 전남대학교 보건진료소 •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(통원, 입원) • 의원급 의료기관(입원진료비에 한함)

의료공제비 지급기준

-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의 60%로 함. 단,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%를 적용하며, 총 지급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.
-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입원진료비에 한하며, 지급비율과 한도액은 병원급과 동일
- 본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때 총 진료비의 80%를 조합이 부담함.
- 본교 보건진료소에서 치아 스케일링을 받은 때 3,000원을 조합이 부담함.
- 본교 보건진료소에서 간염예방 접종 받은 때 2,000원을 조합이 부담함.
- 질병사망 시 장제비 200,000원을 지급함.

의료공제비 지급 제한

- 의료공제조합에서 지급액이 3만원 미만일 때
- 매학기 1회를 초과하여 신청한 때
- 기타 지급이 부당하다고 심사에서 인정한 때

제출서류

- 학생의료비 지급신청서(홈페이지 <http://health.chonnam.ac.kr> 에서 내려 받음)
- 보험급여 본인부담액이 명시된 의료비 영수증
- 보호자명의 은행통장 사본

지급절차

본교 보건진료소에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보호자명의 은행계좌로 지급함.
(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진료소 학생의료공제조합 방문 또는 530-3606로 문의하시기 바람)

2012. 3.

전남대학교 학생의료공제조합 이사장